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일본국 문화청간 문화재분야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토의기록(ROD)

대한민국 문화재청 및 일본국 문화청 (이하 쌍방이라고 한다)은, 문화재에 관한 교류 및 협력의 진전과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일층 촉진하기 위해, 문화재 전반에 있어서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 전문가 등의 교류, 유형 및 무형의 문화재의 교류 나아가 국제기관 사업에의 협력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이하의 교류 및 협력을 행한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협력의 추진을 위해 이하의 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행정관의 교류를 추진한다.

(1) 문화재보호에 관한 행정상 경험을 상호 제공하고, 양국정부 직원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분야 행정관의 교류를 행함. 또한 상기 행정관의 체재중 쌍방의 문화재보호 실정을 학습하는 것에 협력함

(2) 심포지움, 워크숍 기타 국제회의에 문화재 전문가 등의 초빙 및 파견을 장려함

2. 쌍방은, 유형의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이하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의 실시에 노력한다. 유형의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민속자료를 포함한다), 기념물, 전통적건조물군 및 매장문화재를 말한다.

(1) 유형의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을 장려함

(2) 유형의 문화재의 보존기술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을 장려함

(3) 유형의 문화재에 관한 조사·연구를 협력하여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장려함

3. 쌍방은, 무형의 문화재의 보존 및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예·기술을 고도로 체현하고 있는 보유자·보유단체 등에 의한 무형의 문화재와 관련하여 이하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의 실시에 노력한다.

(1) 각각의 국가에 있어서 무형의 문화재의 공연·전시를 추진함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기예·기술의 보유자·보유단체 등의 초빙 및 파견을 장려함

(2) 무형의 문화재에 관련되는 전승자 양성, 기록보존 등의 운영제도에 관한 정보교환함

(3) 무형의 문화재에 관한 조사·연구를 협력하여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장려함

4. 쌍방은,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관이 행하는 문화재보호 사업에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행한다.
5. 쌍방은, 본 협력의 실현을 위해, 각각 자국의 법령 및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수단을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6. 쌍방은, 본 협력을 5년간 시행함과 함께 이하의 사항에 유의한다.
 - (1) 양국의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본 협력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2)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본 협력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쌍방은 본 협력을 계속함
7. 쌍방은, 본 협력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교류계획 및 교류실적에 관한 협의를 위해 실무자 레벨의 회합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함과 함께 이하의 사항에 유의한다.
 - (1) 쌍방은, 실무자 레벨의 회합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본 토의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음
 - (2) 양국의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자 레벨의 회합에서 협력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8. 본 토의기록은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작성한다.

2003년 4월 7일 대전에서

대한민국
문화재청장

盧 太 燮



일본국
문화청장관

河合 隼雄

